2014년도 시행 제56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				
민 법 Ⅱ	응시번호		성 명	

〈제 3 문〉

A는 2014. 2. 2.에 B로부터 3개월을 기한으로 3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A가 소유한 4호 크기의 이중섭 화백의 '황소'를 B에게 양도하고 그 그림을 A의 거실에 계속 걸어두기로 하였다. 그 후에도 급전이 필요하게 된 A는 2014. 3. 3.에 C로부터 2개월을 기한으로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'황소'를 다시 C에게 양도하고 그 그림을 계속 A의 거실에 걸어두기로 하였다. (아래 각 문항은 별개의 사안임)

1. A는 2014. 4. 4.에 이중섭 화백의 작품에 심취한 수집가 D의 집요한 요청으로 '황소'를 D에게 팔기로 약속하고 그에 따라 D에게 '황소'를 넘겨주었다. B와 C는 D에게 '황소'의 인도를 각 청구한다. 각 청구의 정당성을 검토하시오. (10점)

2. 미술관의 개관을 맞아 2014. 5. 5.부터 6. 6.까지 특별전을 기획한 E에게 A는 같은 해 4. 4.에 1,000만 원을 받고 '황소'를 대여하였다. 그런데 같은 해 6. 3.에 잘못 설치된 조명등의 과열로 불이 나 미술관 건물과 함께 '황소'가 소실되었다.
   B와 C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하시오. (15점)

3. A는 2014. 4. 4.에 F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'황소'에 질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날 넘겨주었다. 질권설정에 앞서 F는 권리관계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였으나 '황소'에 양도담보가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. F의 권리를 설명하시오. (15점)

4. A는 2014. 4. 4.에 고미술품 복원전문가 G에게 오랜 기간 방치되어 색이 바랜 '황소'의 보존처리를 의뢰하였다. 같은 해 4. 20.에 보존처리를 마친 G는 A에게 수리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A는 아직 수리비를 주지 않고 있다. B는 같은 해 5. 5.에, 그리고 C는 같은 해 6. 6.에 G를 상대로 '황소'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다.
   G의 권리를 설명하시오. (10점)

확 인 : 법무부 법조인력과장